

"희망의 새 시대"



법 무 부



수신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우편민원(2013. 5. 6.)을 통하여 ①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입학정원의 75% 이상’ 합격 기준을 정하게 된 근거, ② 위 시험의 합격자 결정의 기준으로서, ‘변호사시험의 검증기능’ 과 ‘자격시험적 성격’ 의 차이점, ③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에서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를 판단함에 있어서 검토한 평가요소, ④ 위 시험의 면과락자들이 변호사시험에서 탈락한 이유, ⑤ 변호사 시험이 과연 자격시험인지, 선발시험인지 여부, ⑥ 마지막으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공개에 대하여 문의해 주셨습니다.

아래에서는 귀하께서 문의해 주신 내용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질의 내용 제①항에 관하여

법무부는 2010. 12. 7. 제2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사관리 강화 방안이 확실히 실행되는 것을 전제로,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무난히 취득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용하기로 하고, 우선 제1기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하여는 ‘입학정원의 75% 이상’ 을 합격시키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학사관리가 엄정하게 이루어 질 것을 전제로 입학정원의 75% 이상 합격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대한변협,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였으며,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도입 당시 국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 즉,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매년 입학정원의 70~80% 정도로 하고, 이를 고려하여 법학전문

대학원의 정원을 2,000명으로 정한 취지를 고려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13. 4. 26. 제7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결정된 합격자 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여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 질의 내용 제②항에 관하여

변호사시험법 제1조는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시험의 목적, 성격, 시험의 합격 결정 등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의 검증기능으로서의 성격과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인 성격의 기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질의 내용 제③, ④항에 관하여

소위 ‘과락’ 이란 것은, 변호사시험이 다양한 법률 분야 중 한 가지 분야만을 중점적으로 전공·연구하는 학자나 교수를 배출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다방면의 법률 관련 분야에 고른 학식과 소양을 필요로 하는 변호사가 될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특성상 일정한 득점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합격의 기준 점수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기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듯이 이번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관리 강화 방안 시행 결과, 2회 변호사시험 성적 결과 및 성적 분포, 1기 합격생들과의 성적 비교를 통한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과락자 중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1538명을 합격자로 결정하였습니다.

4. 질의 내용 제⑤항에 관하여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사관리 강

화방안이 확실히 실행되는 것을 전제로,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무난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시험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여야 할 변호사시험의 성격상 일정한 합격률을 미리 확정적으로 정해두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1기생의 5년 내 5회 응시가 마무리 되는 2016년이 되어야 초시와 재시의 합격률 등 통계자료, 시험시행 결과 분석자료, 절대점수제 연구 등 완전한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가 어느 정도 축적되기 때문에 최소한 2016년까지는 과도기적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질의 내용 제⑥항에 관하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있는 사항(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즉, 만약 위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위 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발언 내용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심의 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귀기울여 향후 절대점수제 등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외국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합리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